

서식명 : 대출거래약정서

시행일 : 2025.04.01

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후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비고
<p>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</p> <p>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구 0.7%p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가구 0.7%p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구 0.7%p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가구 0.7%p <p>그 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1.0%p <p>*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</p>		<p>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</p> <p>저출생 해소 지원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3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가구(2자녀)0.5%p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0.7%p <p>*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</p> <p>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구 0.7%p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가구 0.7%p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구 0.7%p <p>그 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1.0%p 		<p>추가 우대금리 항목 (저출생해소 지원층)</p> <p>및</p> <p>조기(중도) 상환수수료</p>
<p>조기(중도) 상환 수수료</p> <p>1. 조기(중도)상환원금×조기(중도)상환수수료를 0.7% ×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]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.</p> <p>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<p>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</p>		<p>조기(중도) 상환 수수료</p> <p>1. 조기(중도)상환원금×조기(중도)상환수수료를 0.5% ×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]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.</p> <p>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<p>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</p>		<p>우대기준 완화</p>
<p>제13조 LTV·DTI 우대 적용</p> <p>담보주택 소재지가 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'조정지역(과열지역) 등' 인 경우로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인 경우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.</p> <p>- 실수요자 요건이란 구입용도,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,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</p> <p>위 특약사항 제13조에 동의함 본인</p>		<p>제13조 LTV·DTI 우대 적용</p> <p>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*인 경우로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전용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보전용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.</p> <p>* 규제지역 : 아래 1~3에 해당하는 지역</p> <p>1.조정대상지역 :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</p> <p>2.투기지역 :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</p> <p>3.투기과열지구 : 「주택법」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</p> <p>- 실수요자 요건이란 구입용도,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,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</p>	<p>용어 정비</p>	

	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		
	위 특약사항 제13조에 동의함	본인	